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547

2020. 6. 17
도시계획관리위원회

Ⅰ. 심사경과

1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. 5. 25. 임만균 의원

2. 회부일자 : 2020. 5. 29.

3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(2020. 6. 17. 상정·의결)

Ⅱ. 제안설명의 요지 (임만균 의원)

1. 제안이유

○ 서울시의 전반적인 민간전문가 운영사항을 규정한 「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도 불구하고, 서울건축문화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련 민간전문가가 위촉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서울시장에 재량을 주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○ 민간전문가 위촉방법, 업무범위, 대가지급 등 민간전문가 위촉 및 운영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(안 제13조 신설)

Ⅲ. 검토보고 요지 (조정래 수석전문위원)

○ 이 개정조례안은 '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'(이하 '총감독'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임만균 의원이 발의하여 2020년 5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.

현 행	개 정 안
〈신 설〉	**제13조(건축문화제 총감독 등 운영)** ① 시장은 건축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민간전문가를 총감독으로 위촉할 수 있다. 1. 건축분야 전문가 2. 전시예술분야 전문가 3. 디자인분야 전문가 ② 총감독은 제6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며, 업무범위 및 대가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○ 이 조례안은 2019년 9월 26일에 제정되었는데, 당시에는 총감독의 선임을 건축문화사업 진흥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만 규정한 것 외에, 업무범위 및 대가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나, 같은 날 「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(이하 '**민간전문가 조례**')가 개정[1]됨에 따라 '2020 서울 건축문화제 총감독 운영계획' 상 업무범위, 선정방법, 대가지급과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음.

---

1) 서울특별시조례 제7291호

- 개정된 민간전문가 조례의 주요 내용은, 민간전문가의 역할을 정책·사업 등의 '조정·기획 등'에서 '자문'만으로 축소하고, 위촉방법은 공개공고를 통한 선정으로 한정하며, 대가는 자문회수에 따른 자문료로만 지급토록 하였음[2].

<민간전문가 조례, '19.9.26 주요 개정사항>

구분	개 정 전	개 정 후
역할	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을 **조정하거나 기획 등**의 역할	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의 **자문 수행**
위촉 방법	**공개공고 원칙** (예외적으로 전문기관 추천 또는 **혁신적 제안자 위촉 가능**)	**공개공고** (**예외 없음**)
대가 지급	업무 범위, 역할, 권한, 근무시간, 경력 등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근거로 **정할 수 있음**	자문 회수에 다른 **자문료로만 지급**이 가능 (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준용, 특별자문은 150%까지 가능)

○ 2020 서울 건축문화제 총감독은 지난 3월에 행사용역사 선정과 함께 선임되었으며, 그 역할은 행사를 총괄·기획하는 것으로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되는데,

이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민간전문가 조례에 부합하도록 공모방식으로 총감독을 선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으로 파악되며[3],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부터는 당초대로 위원회에서 추천받아 시장이 선임할 예정임.

---

2) 「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은 민간전문가의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참여를 위하여 역할과 위촉 공고방식, 자문료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, 특혜성 비전문가 인사 위촉을 방지하고, 부서별로 상이한 민간전문가 운영방식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며, 1인 전문가 의견의 독점적 반영을 지양하고 다수 전문가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영을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 파악됨.

3) 건축문화 관련 기관·단체들의 추천을 받아 건축정책위원회에서 4명의 후보를 추천하였으며, 행사용역 공고 시 4명의 후보를 공개면서 용역사와 후보자가 한 팀을 이루어 공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.

<2019-2020 건축문화제 총감독 운영(안) 비교>

구 분	2019년	2020년
운영기간	1월~12월	3월~11월
위촉 방법	복수 추천을 받아 시에서 위촉	행사용역사와 동시 선정 (총감독 및 행사기획안을 포함)
보수지급 근거	민간전문가 보수지침 (30백만원)	행사·축제 감독 위촉계약 표준안[4] (30백만원)

- 참고로 건축문화제 총감독은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, 건축·전시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행사를 총괄·기획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음.

<총감독제 시행 전후의 행사 운영 조직 비교>

2010-2014 운영조직(집행위원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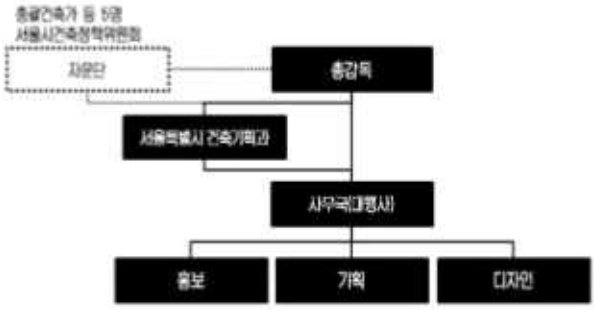

2014년 이후 운영조직(총감독제도 도입)

그 이전에는 '건축문화제 집행위원회'라는 전문가 자문방식이 운영되어 왔으나, 건축전시 기획 기능 미약, 불분명한 행사성격과 전문가의 적극성 부족 등 미비점이 발생하자 이를 보완·개선하기 위해 총감독 제도가 도입되었음[5]을 감안할 때, 개정된 민간전문가 조례를 따

4) 『서울특별시 행사·축제 감독 위촉계약 표준(안) 시행계획(2013. 7. 26.)』 상 축제 예산 및 준비기간에 따른 연봉 상한액 (非상근 시)

축제예산/준비기간	3개월 이하	6개월 이하	12개월 이하
3억원 이상~5억원 미만	11백만원	21백만원	35백만원
3억원 미만	9백만원	19백만원	**30백만원**

를 경우 이같은 과거 문제가 재발할 우려가 있어 보임.

- 다만 관계부서 협의 시 민간전문가 조례 주관부서(서울민주주의위원회) 의견에 따르면 위 개정조례안은 “총감독의 업무 범위, 대가 지급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따로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규정 적용의 우선순위 해석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 조례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”하다는 의견임.

○ 이 개정조례안은 민간전문가 조례[6]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례에서 민간전문가에 대한 별도규정을 둘 수 있는 가운데, 서울 건축문화제 총감독의 업무범위 및 대가지급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, 그 밖에 총감독의 전문분야, 선임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, 건축문화제 행사를 총괄·기획하는 총감독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Ⅴ. 토론요지 : 없음

Ⅵ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Ⅶ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---

5) 「서울 건축문화제의 선진화 방향 연구」, 서울시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(건축기획과, 2018.9.10.)

6) **제4조(적용범위)** ① 이 조례는 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위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용하며, **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**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.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, 제14조, 제15조를 각각 제14조, 제15조, 제16조로 하고,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(건축문화제 총감독 등 운영) ① 시장은 건축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민간전문가를 총감독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1. 건축분야 전문가

2. 전시예술분야 전문가

3. 디자인분야 전문가

② 총감독은 제6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며, 업무범위 및 대가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　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3조(건축문화제 총감독 등 운영) ① 시장은 건축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민간전문가를 총감독으로 위촉할 수 있다. 1. 건축분야 전문가 2. 전시예술분야 전문가 3. 디자인분야 전문가 ② 총감독은 제6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며, 업무범위 및 대가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제13조(사업의 지원) ① ~ ④ (생략)	제14조(사업의 지원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제14조(수당과 여비) (생략)	제15조(수당과 여비) (현행과 같음)
제15조(사무의 위탁) ① ~ ② (생략)	제16조(사무의 위탁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